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동조합(사업조합 포함)에 부여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권한 등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면조합 지정 요건의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인가시에 부여하고 있는 최저 발기인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
- 2)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 3)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총회를 2년이상 미개최한 경우

나.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부여(안 제9조의2)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따라,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반영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4394, Fax : 042-472-8960)